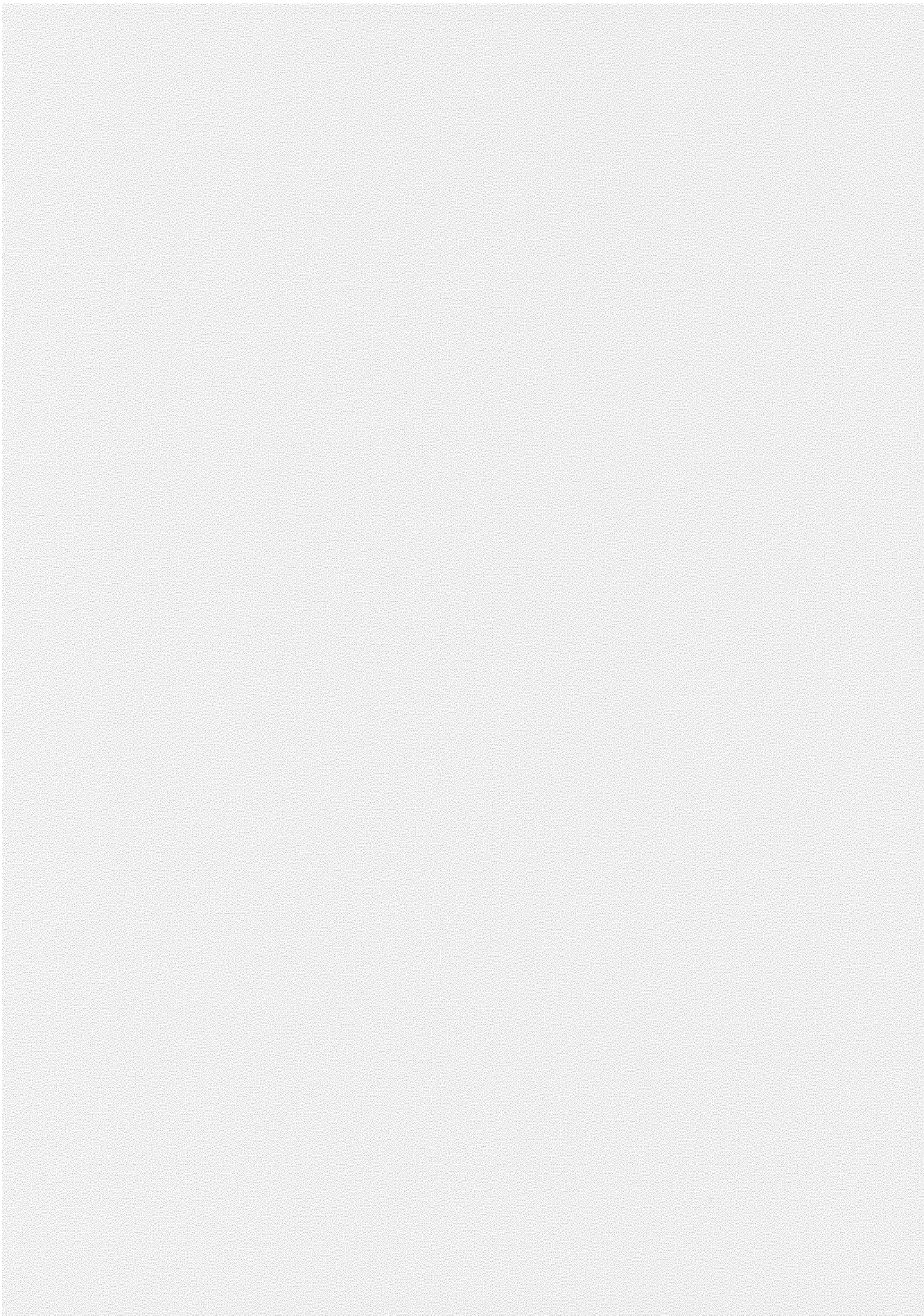


第18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5.9.20. ~ 9.23.)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211
- II.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13
- III.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19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227
 -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29
 - 3.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47
 -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7
 -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261
 - 6.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26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9월 20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8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9월 20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정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과장께서

수해현황 파악차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고규강

[제183회-제1차 본회의]

먼저 의사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까.

(의사와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와장 서광범

의사와장 서광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9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동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4일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의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금년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와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4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 및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9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

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2004년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자 하며, 1995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충주시 종민동 510-3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종인분교장 부지에 교직원의 연찬 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교직원 충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2005년 10월 말경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수영장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대회 및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을 신설하고, 다이빙장 사용료를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 징수하

[제183회-제1차 본회의]

는 등 사용료 반환 규정을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대상, 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제한, 사용자의 책임, 재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내지 15인 이내에서 13인 내지 17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교육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동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정하였고,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위원회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허용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 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3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감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감사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기간중 5일간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나가도록 하는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소위원회에서 수립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진옥경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

[제183회-제1차 본회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11시 15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11시 07분

議事日程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소위원회위원장)

(11시 07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으로부터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은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검토회 참석차,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은 시·도정보화과장 회의 참석차,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국평생학

습축제 참석차, 안세열 시설과장님은 BTL 사업 심포지엄 참석차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문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경우 동 조례안과 관련된 교직원 복지회관은 2004년 2월 12일 가칭 충청북도교육원수련원 건립계획안으로 작성하여 추진한 바 있고, 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으로 명칭으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경우는 2005년 7월 22일 공포된 교육규칙에 의거 충청북도 교직원 충주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교육기관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설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복지회관을 설치하였는 바, 하부조직이 아닌 기관설치를 교육규칙으로 정한 사항과 기관설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출된 점,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 복지회관으로 규정한 것 등 제반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2조 6조 중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중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9인 내지 15인 이내에서 13인 내지 17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교육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 중에서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위원회가 금지행위 및 시설허용을 소홀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7조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운영세칙을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취지 및 내용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83회-제2차 본회의]

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좀더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금번 회기중에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 1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감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승인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발의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며,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그 일정별 대상 기관은, 10월 17일 충청북도진천교육청, 10월 18일 충청북도청원교육청, 10월 19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 10월 20일 충청

북도청주교육청, 10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별로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요구자료는 2005년 10월 7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 (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견에 대하여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과학전람회에 참가하여 학생부에서 50년만의 대통령 수상 및 최우수 1점, 특상 6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교육부에서 31년만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특상 8점, 우수상 6점, 장려상 3점을 수상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충북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드높인 것을 비롯하여 지난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억 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된 것에 대하여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과 해당 학교장 및 지도 선생님, 그리고 입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제183회-제2차 본회의]

다.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3회 충청북

(11시 21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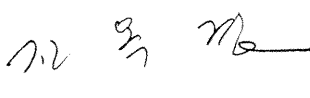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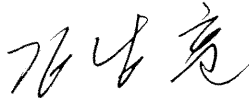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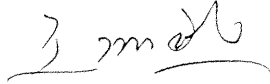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4)
-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별첨 6)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9.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진 옥 경	
위 원	김 남 훈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8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9. 20. ~ 9. 23.(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월 20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9. 20. ~ 9. 23.(4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5. 감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감사소위원회	제안설명 "
9월 21일(수) ~ 9월 22일(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감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9월 23일(금)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183~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1
----------	-------

제출연월일 : 2005. 9. / ㄸ.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2004.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영장을 관리 하고자 하며,
- 1995. 3. 1일자로 폐교된 충주시 종민동 510-3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 부지에 교직원의 연찬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직원충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2005. 10월 개관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간소화 하고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영장 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 다. 각종대회 및 행사 등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다이빙장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장 일반사용자로 구분 징수함.(안 제26조)
- 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수영장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8조제3호)
- 마. 복지회관사용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관장이 허가한 자로 함.(안 제37조)

- 바. 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5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함.(안 제38조)
- 사.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을 별표 4와 같이 정함.(안 제39조)
- 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안 제39조의1)
- 자.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40조)
- 차.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시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안 제41조)
- 카.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함.(안 제42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기 타 : 입법예고(2005. 05. 13 ~ 06. 02) 결과, 특이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 하는 자의 경우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4.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26조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월 회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제43조 내지 제46조로 하며, 제7장(제37조 내지 42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복지회관

제37조(사용대상)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제38조(시설의 사용) ①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료) ①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의1(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사용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2.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정)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27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연장	50,000원	○ 전시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장 당	75,000원			
	전시실 (내부)	20,000원			
	전시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전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수영장 (경영풀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 (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월회원	일반인	4,000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단체입장		중·고등학생	55,000원		
		일반인	70,000원		
		스킨스쿠버	7,000원		
수영장 (전용)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풀장(시간당)	200,000원	○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동계 17:00이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기관명	시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제 천 학생회관	롤 러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다지탈자료실)	후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별표 4】

□ 충청북도교직원총주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39조 관련)

○ 객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비고
11평형	10,000	2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를 기준으로 함
22평형	20,000	30,000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비고
시설사용료	무료	50,000	○ 1일 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

【별지 제4호 서식】

충청북도교직원총주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개인용)				
신청인	소 속 기 관 명		자 택 주 소	
	(☎:)		(☎: HP:)	
	직 명	성 명	주민번호	이용차량번호
동행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희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희망실수	11평형(4인용)		22평형	
			10인용	25인용
	실		실	실
<p>복지회관사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직 성명 (인)</p> <p>충청북도교직원총주복지회관장 귀하</p>				

【별지 제5호 서식】

충청북도교육직원충주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기관·단체용)

1. 기관(단체) 명 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HP :

2. 사용목적 :

3. 사용인원 : 대표자 외 명 (명단 별첨)

4. 사용희망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박 일)

5. 사용희망실수

객 실	11평형 (4인용)	22평형		계
		10인용	25인용	
	실	실	실	실
일반시설	<input type="checkbox"/>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	※ 희망란에 “○”표 기재	
	<input type="checkbox"/> 분임토의실 ()	<input type="checkbox"/> 체력단련실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박 일)	

복지회관 사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장

(인)

충청북도교육직원충주복지회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직원충주복지회관 사용허가서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

1. 기관·단체명(개인의 경우는 소속기관명) :
2. 사용인원 : 대표자 의 명
3. 사용희망시설 및 기간

개 실	11평형	22평형		계	
	실	10인용 실	25인용 실		실
일반실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		□ 세미나실 ()		※ 희망란에 “O”표 기재
	□ 분임토의실 ()		□ 체력단련실()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박 일)				

4. 허가조건 :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련원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청충주복지회관장 (인)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지역교육청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수련원 및 야영장”이라 한다), <u>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공동실습소”라 한다)</u>등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학생회관</p> <p>제21조(학생회관의 사용) ①학생회관의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 설></p> <p>②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2조(정의)</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u>지역교육청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학생회관</p> <p>제21조(학생회관의 사용) ①.....</p> <p>.....</p> <p>.....</p> <p>.....</p> <p>.....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팅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p> <p>②.....</p> <p>.....</p>

현행	개정안
1. 도서관 사용자 및 입·퇴관 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 4. <신설>	1. 2. 3. 4. <u>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u>
제2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신설>	제28조(사용료의 반환) 1. 2. 3. <u>월회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u>
<신설>	제7장 복지회관 제37조(사용대상)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제38조(시설의 사용) ①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내지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 신설 ></p> <p>< 신설 ></p>	<p>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9조(사용료) ①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4와 같다.</p> <p>제39조의1(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40조(사용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2.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u>< 신설 ></u></p> <p><u>< 신설 ></u></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공동실습소</p> <p><u>제37조(사용대상)</u> 공동실습소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p> <p><u>제38조(사용제한)</u> 실습소 이용자가 실습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소장은 실습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의 실습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 실습소 안전수칙을 위반 할 때 3. 기타 실습에 부적합하다고 소장이 판단 될 때 <p><u>제39조(사용자의 책임)</u> 사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p>	<p><u>제41조(사용자의 책임)</u>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p> <p><u>제42조(재정)</u>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공동실습소</p> <p><u>제43조(현행 제37조와 같음)</u></p> <p><u>제44조(현행 제38조와 같음)</u></p> <p><u>제45조(현행 제39조와 같음)</u></p>

현행				개정안			
<p>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40조(사용료) 일반인이 실습소를 사용할 경우 실습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제46조(현행 제40조와 같음)			
【별표2】				【별표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생략)			충청북도 학생회관	(현행과 같음)		
	수영장	다이빙장	1일당 10,0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스킨스쿠버	10,000원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 시 사용 가능	월회비	초등학생이하	2,500원	○ 스킨스 쿠버용 압 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일반인	70,000원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경영폴장 (시간당)	200,000원		○ 일·공휴일 및 야 간사용(동계 17:00이 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 가산
				다이빙장 (시간당)	100,000원		○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간주
				개인사물 함(월)	3,000원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
제천 학생회관	(생략)			제천 학생회관	(현행과 같음)		
공통	(생략)			공통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개정 2005.3.24 법률 제7410호)

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に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83~8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9월 12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 ~ 2
----------	---------

제출연월일 : 2005. 9.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3~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 라. 정화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임

○ 기 타 : 입법예고(2005. 7. 1 ~ 7. 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회무를 통리”를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사항)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학교환경위생정
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정화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u>	<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교보건법</u>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u>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학교보건법</u>」----- ----- ----- -----</p>
<p>제2조(설치) <u>충청북도교육감</u> 소속하에 <u>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이하 “<u>도정화위원회</u>”라 한다)를, <u>하급교육청교육장</u> 소속하에 <u>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이하 “<u>교육청정화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설치) <u>지역교육청 교육장</u>(이하 “<u>교육장</u>”이라 한다) 소속하에 <u>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u>(이하 “<u>정화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각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u>도정화위원회</u>의 위원장은 <u>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수의 1/2이상은 학부모 이어야 한다.</u></p> <p>③<u>교육청정화위원회</u>의 위원장은 <u>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수의 1/2이상은 학부모 이어야 한다.</u></p>	<p>제3조(구성) ①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위원은 당해 <u>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 ③ (생략)</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화위원회 심의사항) ①도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교육청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6조(심의사항)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 2. 기타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p>
<p>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제7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 (생략)</p>	<p>제8조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정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관계 법령 발췌서

1. 학교보건법 [1967. 3. 30 법률 제1928호] ▶ 일부개정 2005. 3.24(법률 제7396호)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5. (생략)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보건법시행령 [1969. 12. 25 대통령령 제4311호] ▶ 일부개정 2005. 3.31(대통령령 제18771호)

제4조의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별첨 4)

제183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9.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9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9월 20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9월 20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9월 2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노재전)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2004.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자 하며,
- 1995. 3. 1일자로 폐교된 충주시 종민동 510~3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 부지에 교직원의 연찬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직원충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2005. 10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을 추가함.(안 제2조)
-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간소화 하고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영장 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 각종대회 및 행사 등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다이빙장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장 일반사용자로 구분 징수함.(안 제26조)
- 사용료 반환 기준을 수영장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8조제3호)
- 복지회관 사용 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관장이 허가한 자로 함.
(안 제37조)
- 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5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함.(안 제38조)
-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을 별표 4와 같이 정함.(안 제39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안 제39조의1)
-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40조)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시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안 제41조)
-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함
(안 제42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조례안과 관련된 교직원 복지회관은 2004년 2월 11일 가칭 『충청북도 교직원 수련원 건립 계획안』으로 작성하여 추진한 바 있고,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의 명칭으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에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경우 2005년 7월 22일 공포된 교육규칙에 의거 『충청북도 교직원 충주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교육기관 설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설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동 조례 시행 규칙으로 복지회관을 설치 하였던 바, 하부조직이 아닌 기관설치를 교육규칙으로 정한 사항과 기관 설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용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출된 점,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으로 규정한 것 등 제반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보류 결정 하였음.

6. 심사결과 : 보류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5)

제183회 임시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9.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9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9월 20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9월 20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9월 21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노재전)

가. 제안이유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 제6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3~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4조)
- 정화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화위원회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 안 제2조, 제6조 중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 안 제3조 중 학교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9 ~15인 이내에서 13~17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교육장이 말도록 되어 있는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 중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정화위원회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허용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운영 세칙을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6)

의안번호	제 183 - 3호
의 결 년 월 일	2005. 9. 23. (제 183 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발 의 자	감사소위원회위원장
발의년월일	2005. 9. 2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183-3호
----------	---------

발의일자 : 2005. 9. 22.

발 의 자 : 감사소위원회위원장

1. 발의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감사기간 : 2005. 10. 17.(월) ~ 10. 21.(금) / 5일간

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 (1) 2005. 10. 17.(월) 14:00, 충청북도진천교육청
- (2) 2005. 10. 18.(화) 10:00, 충청북도청원교육청
- (3) 2005. 10. 19.(수) 10:00, 충청북도괴산교육청
- (4) 2005. 10. 20.(목) 10:00, 충청북도청주교육청
- (5) 2005. 10. 21.(금) 10:00, 충청북도교육청

라. 감사소위원회 구성 : 의장을 제외한 교육위원 6명

마.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함.

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 붙임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05. 9. 2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70
2. 감사기간	270
3. 감사대상 기관	270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사무보조직원 지정	270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271
6. 감사자료 요구	271
7. 감사요령	271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72
9. 행정사항	272

※ 붙임 내역

○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274
○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276
○ (별첨3) 증인선서문	277
○ (별첨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27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 감사의 목적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교육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바람직한 사항은 더욱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5. 10. 17.(월) ~ 10. 21.(금)(5일간)

3. 감사대상 기관 (5개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충청북도청원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충청북도괴산교육청

4. 감사소위원회 구성 및 사무보조직원 지정

가. 감사소위원회

직 위	성 명
위원장	성영용
간 사	진옥경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나. 사무보조 직원 : 의사국 직원 5명

- 의사국(과)장, 의사담당, 6급 1명, 7급 1명, 속기사 1명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차수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1	2005.10.17.(월)14:00	충청북도진천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청 회의실
2	2005.10.18.(화)10:00	충청북도청원교육청	충청북도청원교육청 회의실
3	2005.10.19.(수)10:00	충청북도괴산교육청	충청북도괴산교육청 회의실
4	2005.10.20.(목)10:00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청 회의실
5	2005.10.21.(금)10:00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6. 감사자료 요구

가. 2005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

나. 감사 자료요구 내역 : (별첨4)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 질의 및 답변, 관련 서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나. 감사진행 순서

진행순서	비고
<input type="checkbox"/> 감사실시 선언	
<input type="checkbox"/> 위원장 인사	
<input type="checkbox"/> 증인선서	
<input type="checkbox"/>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input type="checkbox"/>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10분 이내
<input type="checkbox"/> 질의 및 답변	- 질의 후 정회
<input type="checkbox"/> 감사결과 강평	- 생략가능
<input type="checkbox"/> 감사종료 선언	

8.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가. 감사대상기관별 출석대상

- 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과장급이상 공무원
- 지역교육청 : 교육장, 과장급이상 공무원

나. 출석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일
- 장 소 : 감사세부일정에 의한 해당감사장소

9. 행정사항

가. 4쪽(6항)의 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피감사기관별로 13부를,
- 각 위원별 요구서에 의한 감사자료는 전 위원 통합분 5부, 위원별 발췌분 각 1부씩을,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은 13부씩을 작성하여 10. 7.(금) 12:00까지 제출

나. 대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대외비 공개자료 표시 제출

다.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 : (별첨1) '감사장 좌석배치도' 참조
- 명패준비 : 위원장, 위원, 기관장, 기자석 등
- 방송설비 : 마이크는 위원장석·감사위원석·기관장석·발언대에 각 1개씩 설치
- 녹음준비 : 녹음장비 및 카세트 테이프 준비
(※ 녹음불량 사례 없도록 주의)

- 출석대상 공무원 명단 : (별첨2)서식에 의거 감사당일 감사위원 및 감사 진행 보좌직원 좌석에 배부

라. 기타 지원요청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 감사위원 이동용 버스 1대 지원(2005. 10. 17. ~ 10. 21.)
- 공통사항
 - 속기실에 3구용 멀티탭 배선(속기장비 연결용)
 - 의사국 직원석(보조)에 컴퓨터, 프린터 각 1대씩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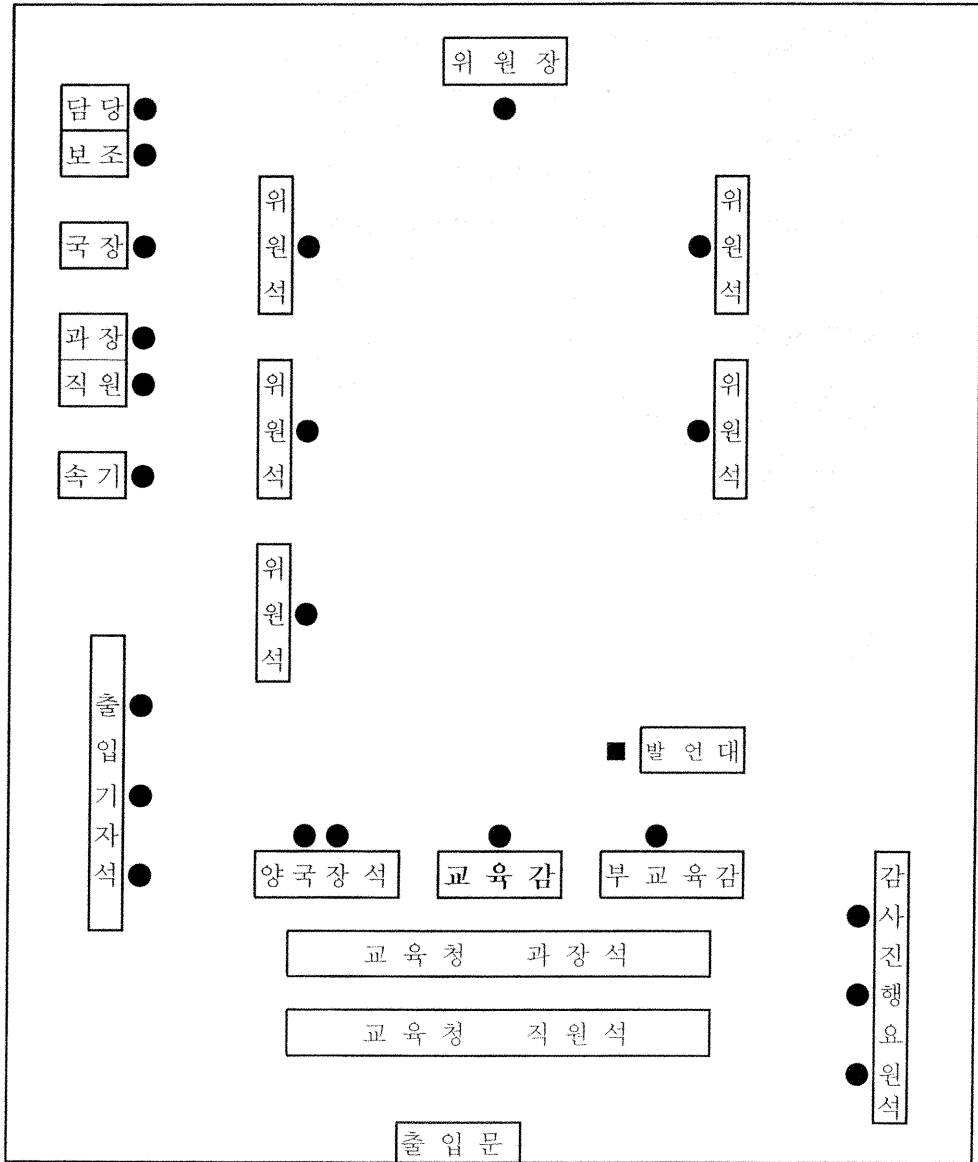
※ 붙임 내역

1. (별첨1, 1-1) 감사장 좌석 배치도 1부.
2.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서식) 1부.
3. (별첨3) 증인선서문 1부.
4. (별첨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내역 1부.

(별첨1)

감사장 좌석 배치도

<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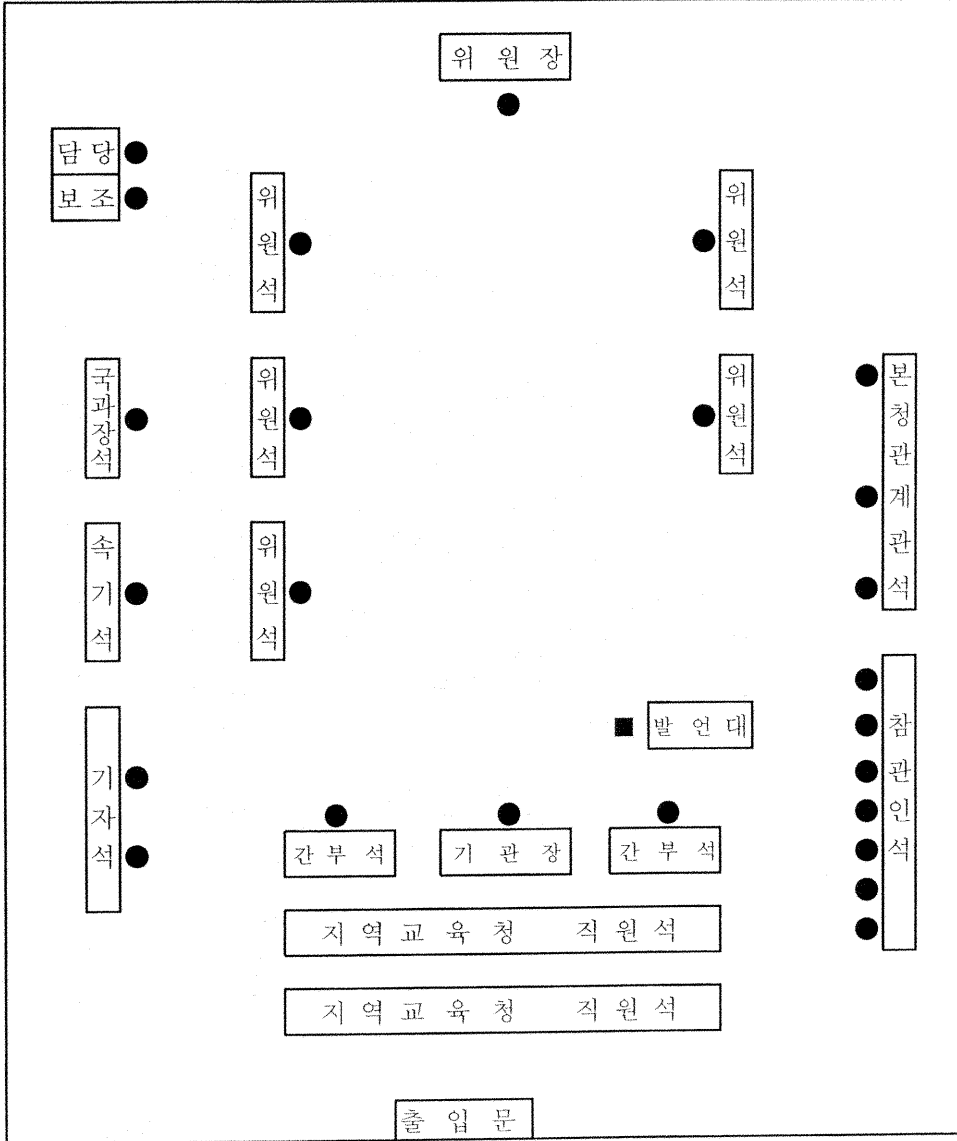


※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1-1)

감사장 좌석 배치도

<지역교육청>



※ 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별첨2)

출석공무원 명단

기관명 :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 성명 : 한자로 기재

(별첨3)

선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0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직 성명 (인)

(별첨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요구위원 : 김남훈 위원

1. 여비 지급 현황(2004, 2005 현재) :

가. 자격연수 여비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명	과정별	연수인원	연수장소	연수기간(일)	1인당 정액지급액 (A)	타절액 (B)	실지급액 (C=A-B)	
	2004		교 장							
			교 감							
			1급정교사							
			계							
	2005		교 장							
			교 감							
			1급정교사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1급정교사 제외)은 도내 전체 현황 작성

나. 자연과연수 여비 :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명	인원수	연수장소	연수기간(일)	1인당 정액지급액 (A)	타절액 (B)	실지급액 (C=A-B)
	2004							
	2005							

<작성요령> 연수대상자가 있는 학교에서만 작성

다. 관내·관의 출장 여비 타절 여부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급별	관내여비		관외여비		비고
			정액 지급 학교수	타절 지급 학교수	정액 지급 학교수	타절 지급 학교수	
	2004	초					
		중					
		고					
		계					
	2005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현황 작성

2. 교원 업무 경감 추진 현황(2003, 2004, 2005. 9.30) : 도교육청

(건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 9. 30일까지			비고
	접수	발송	계	접수	발송	계	접수	발송	계	
상급기관										
유관기관										
산하기관										
대내문서										
계										

2-1. 교원 업무 경감 추진 현황(2003, 2004, 2005. 9.30) :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건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 9. 30일까지			비고
	접수	발송	계	접수	발송	계	접수	발송	계	
상급기관										
유관기관										
산하기관										
대내문서										
계										

3.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2004, 2005. 9. 30) : 도교육청
(단위 : 천원)

과별	위 원 회 명	인원수	운영횟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04	'05	'04	'05	

4. 사업별(교육사업비 및 시설비) 집행현황(2004, 2005. 9. 30 현재) :

가. 본청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내역 : 도교육청

1. 교육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해당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작성요령> 연도별 작성

2. 시설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해당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작성요령> 연도별 작성

나. 지역교육청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내역 :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1. 교육사업비(2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도별	해당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작성요령> 연도별 작성

2. 시설사업비(1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도별	해당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작성요령> 연도별 작성

5. 바이오 학생교육문화회관(가칭)건립 후 추진 현황 : 도교육청

가. 사업시작 연도 :

나. 예산확보 현황 :

다. 건립 추진 과정 및 성과(2005. 9. 20 현재) :

라. 예산집행 현황 :

마. 기타 건립에 따른 필요사항 :

6.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2004, 2005. 9. 30)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급별	다목적 교실		휴가중 학교시설물 대여		기타		비고
			학교수	사용료 징수액	학교수	사용료 징수액	학교수	사용료 징수액	
	2004	초							
		중							
		고							
		계							
	2005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연도별 별지 작성

6-1.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현황(2004, 2005. 9. 30) :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명	다목적 교실 사용료 징수액	휴가중 학교시설물 대여 징수액	기타 사용료 징수액	비고
	2004					
	2005					

<작성요령> 연도별 별지 작성

□ 요구위원 : 성영용 위원

1.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 : 도교육청

가. 연구시범학교수 (2003, 2004)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급별	군지정	도지정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기타지정	
	2003	초					
		중					
		고					
		계					
	2004	초					
		중					
		고					
		계					

<작성 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나. 연구시범학교운영비(지정주체별 구분)집행총액(2004)

(단위 : 천원)

교육청명	학교급별	군지정			도지정		
		기본학력확인제	보건교육	...	기본학력확인제	교실수업개선	...
	초						
	중						
	고						
	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기타지정		
기본학력확인제	교실수업개선

<작성 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지정주체별 구분은 예시임

다. 2004년도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

<작성요령> 지정주체별 5개 학교 무선 표집(경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사본 제출)

라. 2004년도 연구시범학교 운영 결과(사업 종료 분) 일반화 사례

<작성요령> 일선학교에 적용, 확산시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가능한한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첩하지 말고 일선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람.

2. 교육관련 간행물 발행과 관련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가. 2004년도 간행물(정기, 비정기, 일회성 포함한 학습자료) 발행실적

기관별	구분	간행물제목	발행일시	학습자료명	예산액	배부처	비 고
	정기						
	비정기						
	일회성						

나. 정기간행물 발행 후 효과 즉 활용도와 성과 분석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3. 도서관 운영과 관련 : 도교육청

가. 도서관별 보유 장서수, 연간 열람자수 현황

기관별	보유장서수(2005. 4. 1 현재)	연간 열람자수(2004년도)	비 고

나. 도서관별로 수요자 중심 열람을 위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일반직 및 기능직 인사와 관련(2003, 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가. 도교육청에서 발령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발령현황

연도별	발령인원			발령일자	공문시행일	비 고
	일반직	기능직	계			
2003						
2004						
2005						

나. 일반직 5급 이상 중 1년 미만 근무 전보자 명단 및 사유

5. 공무원 범죄 결과 처분과 관련(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가. 2004년 ~ 현재까지 음주운전 관련 처분자 명단 및 처분 결과(인사조치 포함)

연도별	구분	직위(급)	성 명	처분일자	행정처분	비 고
2004	교 원					
	일반직					
	기능직					
2005	교 원					
	일반직					
	기능직					

나. 2004년 ~현재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적격 교사 기준에 해당되는 범위로 처분 받은 교원수
(단위 : 명)

연도별	학교급별	교 원 수				비 고
		교장	교감	교사	계	
2004	초					
	중					
	고					
	계					
2005	초					
	중					
	고					
	계					

6.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2005 현재) :

가. 중장기 발전계획 모형개발 보급여부 및 시기
<작성대상> 도교육청

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명
<작성대상>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7. 장학지도 관련(2004) : 도교육청

가. 2004년도 장학지도 결과 환류(Feed Back)실적, 우수사례 일반화 등 구체적으로 제시

8. 학생회관 수영장 운영의 손익계산 및 향후 운영방안 : 도교육청

□ 요구위원 : 송대현 위원

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 도교육청(고),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가.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교육과정 평가』의 문제점

나. 수행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도구 활용실태 및 문제점

<작성요령> 장학지도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다. 심화·보충과정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교과협의회 회의록 사본

<작성요령> 지역교육청 - 관내중학교 2교 선정 / 도교육청 - 고등학교 2교 선정
회의록 사본 제출

2. 좋은 수업에 대하여 :

가. 좋은 수업을 위한 장학활동으로 『테마가 있는 맞춤장학』과 『외부자원 활용 컨설팅 장학』을 들고 있는데, 이들의 개념과 성과 : 도교육청

나. 역할로서의 장학이나, 과정으로서의 장학으로 볼 때, 종래의 『협동장학』 『협력장학』과의 차이점 : 도교육청

다. 『맞춤장학』이나 『컨설팅 장학』의 모형 제시 : 도교육청

라. 좋은 수업 방법을 지원하는 『수업★스타』지원단 운영에 따른 선발 기준·실적·예산·문제점(2004, 2005)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마. 『수업★스타』명단(2004, 2005)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3. 전입학 및 평준화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하여 :

가. 청주시(평준화지역)에서 중학교와 중학교 사이,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전학 절차 및 관계규정 제출 : 도교육청, 청주교육청

나. 금년도 청주시(평준화 지역)에서 『인고』 신입생 추첨 배정에서 2학교에 배정인원을 늘려 재배정한 경위와 관계규정 제출 : 도교육청

4. 교감·교장의 전보 내신과 관련하여(2003, 2004, 2005) : 도교육청

가. 3. 1 자, 9. 1 자 교장·교감의 전보를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산하기관에 전보 내신을 하도록 시달한 공문 사본

나. 교감·교장의 전보 내신자 명단 사본

<작성요령> 초·중등 각각 작성

5. 교과목 상치교사와 관련하여(2003, 2004, 2005) : 청원·진천·괴산교육청

교육청명	학교명	학급수	교원수	상치교사 현황		2과목이상 지도하는 교사수	비고
				상치과목	상치 교사수		

6. 집단 따돌림과 관련하여(2003, 2004, 2005) :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가. 집단 따돌림 등 학생 고충 신고 전화 운영 현황 및 실적

7. 미국 치코 대학의 영어 어학연수에 대하여 : 도교육청

가. 연수실적(2005년 현재까지, 초·중등 구분)

나. 연수경비(2005년 현재까지, 개인이 부담한 경비 제외)

다. 어학연수 이수자의 효력(일반연수 인정 여부)

라. 치코 대학 외에 추진하고 있는 어학연수 계획(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포함)

8. 저출산율에 따른 중·장기 학생 수급 현황에 대하여 : 청주·충원·진천·괴산교육청

가. 예상되는 택지개발 계획

나.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 추이 제출

교육청명	학교급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초	학생수							
		학급수							
		증감							
	중	학생수							
		학급수							
		증감							

<작성요령> 학생수 변동 추이 조사, 증감은 2005년 대비 학생수 대비

9.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 청주·충원·진천·괴산교육청

가. 단독원사를 보유하고 5학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 현황

교육청명	유치원명	학급수	원아수	교원수	비고

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 단설 유치원 부지 확보한 실적

교육청명	택지개발지구 위치	개발시행청	확보부지면적	유치원부지수	비고

10. 학원의 원어민 강사 자격에 대하여(2003, 2004, 2005 현재) : 청주교육청

가.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연도별	외국어 학원				교습소 현황(외국어)			
	학원수	원어민 강사수	원어민 강사자격	지도점검결과 자격미달강사수	교습소수	원어민 강사수	지도점검결과 자격미달 강사수	

11. 사학의 건실한 발전 지원에 대하여(2003, 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 실적

나. 재정결합 보조금 지급 실적

<작성요령> 학교별 보조금 내역 포함

12. 교원 복지와 관련하여(2005 현재) : 도교육청

가. 교사 맞춤형 복지비에서 의무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 보험료 내역

나. 공개 입찰 과정

<작성요령> : 공·사립별 / 남·여별 / 시·도별 비교표

13. 교원의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가. 각급학교에 비치하는 교무·학사·근무와 관련한 각종 장부명

<작성요령>

- 행정실 비치 장부 제외 작성

- 지역교육청 : 관내 학교 중 규모가 제일 큰 학교(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 도교육청 : 인고 1교, 실고 1교

○ 제출 양식 : 아래 항목별로 작성

가. 법정장부(법령·자치법규에서 명시한 장부)

나. 비법정 장부중 업무의 연속성, 행정지도, 관리상 필요하여 지침, 예규, 회의자료 등에서 비치하도록 명기한 장부

다. 비법정 장부중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적 장부와 학교 관리·운영상 필요한 장부로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활용하는 장부

라. 기타 활용하고 있는 장부

마. 최근 3년간 통합이나 폐지한 장부명

14. 감사처분에 관하여 : 도교육청(충주교육청)

- 가. 전 여성여중 김홍식 교장(현 증평중 교장)에 대한 충주교육청 감사 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판 청구에 대한 자료

<제출자료>

- 가. 충주교육청의 감사처분 사본(최초)
- 나. 김홍식 교장 이의서(1차, 2차)사본
- 다. 김홍식 교장 이의서에 대한 충주교육청 처분(1차, 2차)사본
- 라. 이의서에 대한 재심의 회의록 사본
- 마. 김홍식 교장 감사원 심판청구 사본
- 바. 감사원 제출 심판 청구에 대한 충주교육청 처분 타당성 소명자료

15. 행정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 요구 :

- 가. 2005년도 주업업무 추진계획(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 나. 자치법규에 있는 사무관리 및 문서관리 규정(도교육청)
- 다. 충청북도 교원 인사규정 및 인사원칙(도교육청)
- 라. 의무교육에서 취학 유예 면제 관련 규정(도교육청)

□ 요구위원 : 이기수 위원

1. 최근3년간 학교폭력 현황(2003, 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급별	발생건수	폭력유형	피해자수	처리결과	
	2003	초					
		중					
		고					
		계					
	2004	초					
		중					
		고					
		계					
	2005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12월말 기준(2003, 2004), 8월말 기준(2005)

2. 최근 2년간(2004 ~2005)폐교관리 현황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교육청명	폐교일자	폐교명	현황		미입대				비고
			임대	미입대	위탁관리		자체관리		
					인원	월지급액	관리기관 (학교)	월관리비	

<작성요령> 매각분 제외,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연도별 별지작성

임대 시 연간 임대료 수입기재

3. 도내 홍보용 전광판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단위 :천원)

연도별	설치연월일	설치장소	연간전기요금	관리인원	비고
2004					
2005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4. 여교사 탈의실, 교사휴게실 현황(2005 현재)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학교수)

교육청명	학교급별	탈의실		교사휴게실		비고
		설치교	미설치교	설치교	미설치교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5. 원어민 교사 현황(2005 현재) : 도교육청

기관별	국적	등급	과목	계약현황			비고
				신규(명)	재계약(명)	월보수액(천원)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5-1. 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계획(2005 현재) : 도교육청

<작성요령> 구체적으로 기재

6. 최근 3년간 학생, 교사 해외어학 연수현황 및 경비지원 현황 : 도교육청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학 생				교 사				비고
	연수기간	연수인원	지원액	어학연수지	연수기간	연수인원	지원액	어학연수지	
2003									
2004									
2005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 작성연도 : 2003년, 2004년, 2005 현재

7.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 자매 결연 후 추진한 사업 및 앞으로 추진할 사업(행사)계획 : 도교육청
 <작성요령>구체적으로 기재

8. 환경교사 확보 현황(2005 현재) : 도교육청

구 분	환경교사	비고
정 원		
현 원		
부족인원		

9. 교육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2005. 1. 1 ~ 현재) : 도교육청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비고

10. 과학실험실 오·폐수처리 현황(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학교수)

교육청명	연도별	학교급별	오·폐수처리 현황		비고
			자체 처리교	위탁 처리교	
	2004	초			
		중			
		고			
		계			
	2005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11. 한글사랑관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2005 현재) : 도교육청

<작성요령> 구체적으로 기재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근 3년간 재정적 지원 현황(2003, 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단위 : 천원)

교육청명	연도별	지원기관명	지원일자	지원 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2003					
	2004					
	2005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13. 최근 3년간(2003년, 2004년, 2005년) 급당 학생수 변화와, 앞으로 3년간 급당

학생수 변화 : 도교육청

가. 도시지역(청주, 충주)

나. 농촌지역(청원, 진천, 괴산)

14. 학부모 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교육내용과 교육인원(2003, 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연도	학부모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비고
	인원	과목	교육내용	인원	과목	교육내용	인원	과목	교육내용	
2003										
2004										
2005										
계										

<작성요령>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현황 작성

15. 교직원단체 재정지원 현황(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 단체명	지 원 액	비고
2004			
2005			

□ 요구위원 : 이상일 위원

1. 학교 교육의 혁신 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충북 교육 실정에 맞는 학교 혁신 모형은 어떤 것인지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가. 학교 혁신의 방향

나.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방안

다. 바른 인성과 기초 질서 교육 강화 방안

라.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

마.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학교 혁신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안으로 유도 하는 방안

2.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도입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 :

도교육청,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가. 수행 평가의 문제점이 많아 기본 개념 및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나. 수행평가 성적표는 대동소이 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필고사를 통한 학업 성취도 측정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다. 현재 지필고사로 학업 성적을 측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수 : 지역교육청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측정학교수	비율(%)	비고

<작성요령> 시·군 교육청별로 작성 /작성기간 : 2005년 9월말 현재

3.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 부족문제 해결대책과 관련하여 : 도교육청

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 감소에 따른 실업교육 육성 방안

나.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 유인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변경 및 개선대책

다.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요청에 대한 견해

라.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학생수 연도별 증감 현황 (2003년 ~ 2005년)

졸업연도	계열별	졸업자	진학자(비율,%)	전년도 대비 연도별 증감진학자수
2003년	농업계열			
	상업계열			
	공업계열			
	계			
2004년	농업계열			
	상업계열			
	공업계열			
	계			
2005년	농업계열			
	상업계열			
	공업계열			
	계			

<작성요령>

○ 전년도 대비 연도별 증감 진학자수 : △2명

예) 2002년도 농업계열 10명일 경우, 2003년도 농업계열 8명일 경우는

○ 농·공계열의 학교의 경우는 계열별로 졸업자, 진학자 구분 기재

4.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 도교육청

- 가. 학교 에너지(전기)의 효율적인 절약 방안
- 나. 학교 신·개축시 에너지 절약형 건물 설계 계획
- 다. 교직원의 출·퇴근 차량 10부제 운영 방안

5. 학교 급식실(소) 위생 점검 결과 저 등급을 받은 학교현황과 개선 및 지도대책 :

청주·청원·진천·괴산교육청

가. 저 등급을 받은 학교현황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위생점검학교수	저등급 학교수	비고
	초				
	중				
	계				

나. 학교급식 위생 실태 점검 절차 및 저등급 학교에 대한 지도대책

다.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급식실(소) 에어컨 보유현황과 확보계획

교육청명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급식학교수			급식실 (소)수	에어컨				미보유 확보계획
			직영	위탁	계		보유		미보유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초										
	중										
	계										

라. 급식실(소)을 시급히 개축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학교수

교육청명	학교급별	학교명	건축년도	건물구조	내구연한	학교수		비고
						개축	보수	
	초							
	중							
	계							

<작성요령>

- 학교수 개축, 보수란에 시급을 요하는 곳 ○로 표시하고,
학교급별 『계』란은 개축, 보수 집계 학교수 기재

6. 도내 중·고등학교 냉방시설(에어컨)보급 현황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중·고등학교 냉방시설(에어컨) 보급 현황(2005년 7월말 현재)

교육청명	학교급별	학교수	학급수	교실수				보급현황(실수)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계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계
	중							()	()	()	()
	고							()	()	()	()
	계							()	()	()	()

<작성요령> ()에 % 기재

나. 냉방시설(에어컨)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액, 보급 완료연도

교육청명	학교급별	미보유 현황(실수)				소요 예산액	보급 완료연도	비고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계			
	중							
	고							
	계							

<작성요령> 소요예산액 : 미보유현황(실수)×예산편성단가

7. 학교 도서관 활용 실태(2005. 3. 1일 기준)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초·중·고별 도서관 보유수, 개방시간, 독서인증제 실시학교수

교육청명	학교급별	도서관 보유실수	도서관 개방시간			독서인증제 실시학교수	비고
			최저	최고	평균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도서관 개방 시간 : 시간 기재 예) 3시간

나. 학교도서관 설치 완료연도(2005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청명	학교급별	도서관 보유학교수	도서관				비고	
			미보유 학교수	설치완료연도				
				2006	2007	2008		2009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설치완료연도 연도별란은 학교수 기재

8.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보충학습 지도에 대하여(2005. 3. 1)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가. 초·중·고별 보충학습 지도 실시 학교수, 실시 과목수, 방과후 시간

교육청명	학교급별	보충학습 지도 학교수	실시 과목수	방과후 시간	비고
	초				
	중				
	고				
	계				

<작성요령> 방과후 시간 : 6시간, 7시간 등 기재

나. 소외계층 학생 보충 학습지도를 위해 시·군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은

□ 요구위원 : 진옥경 위원

1. 2005년도 학생 출석부

가. 유치원 : 5세아 각 1개반(반명, 성명, 번호, 성별 표기)

- 청 주 : 산성, 서원, 창신초 병설
- 청 원 : 교원대부설, 미원초 병설
- 충 주 : 남산초, 예성초 병설
- 제 천 : 의림초, 홍광초 병설
- 보 은 : 삼산초, 동광초 병설
- 옥 천 : 삼양초, 죽향초 병설
- 영 동 : 영동초, 이수초 병설
- 진 천 : 상산초, 삼수초 병설
- 괴 산 : 명덕초, 동인초 병설
- 음 성 : 대소초, 수봉초 병설
- 단 양 : 단양초, 매포초 병설

나. 초등학교 : 학년별 각 2개반(각 학교 1-1, 6-1, 성명, 번호, 성별 표기)

- 청 주 : 교동, 덕성, 남성, 용담초현양원분교
- 충 주 : 탄금초, 중앙초, 산척초,
- 제 천 : 의림초, 신백초, 한송초
- 청 원 : 내수초, 교원대부속초, 옥산초, 외천초
- 보 은 : 삼산, 동광, 회인초
- 옥 천 : 삼양, 죽향, 증약초
- 영 동 : 영동, 이수, 초강초
- 진 천 : 상산, 삼수, 백곡초
- 괴 산 : 명덕, 동인, 죽리초
- 음 성 : 용천, 수봉, 오선초
- 단 양 : 매포, 단양, 가평초

다. 중 학교(각 학교 1-1, 2-1, 성명, 번호, 성별 표기)

- 청 주 : 원봉, 청주동, 율량, 남성중
- 충 주 : 중앙, 탄금중
- 제 천 : 제천동, 내토중
- 청 원 : 교원대부설미호, 내수중
- 보 은 : 보덕, 원남중
- 옥 천 : 청산, 이원중
- 영 동 : 영동, 용문중
- 진 천 : 이월, 광혜원중
- 괴 산 : 괴산, 증평중
- 음 성 : 무극, 대소중
- 단 양 : 단양, 매포중

라. 고등학교(각 학교 1-1, 2-1, 성명, 번호, 성별 표기)

- 청 주 : 충북대사대부속, 금천, 상당, 서원고
- 충 주 : 충주농고, 주덕고
- 제 천 : 제천농, 디지털전자고
- 청 원 : 한국교원대부설, 충북과학고
- 보 은 : 보은자영, 보은정보
- 옥 천 : 옥천고, 옥천상고,
- 영 동 : 영동, 황간고
- 진 천 : 진천, 진천농공고
- 괴 산 : 괴산, 증평공고
- 음 성 : 음성, 금왕고
- 단 양 : 단양, 단산고

2. 충청북도 초·중·고 교원 정계 및 행정처분(주의, 경고) 현황(2003, 2004, 2005)

(교육청별, 직위 표기, 익명 표시, 6하 원칙에 의거 사안 정리)

- 정기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행정지도 포함 작성

3. 2005 덕성초등학교 교원 관련 정계위원회 회의록

4. 도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2005. 9월 1일 현재)

(번호, 위원회명, 위원수, 회의개최 회수, 안건 심의 회수, 위원 직업, 임용기간, 예산집행 현황)

5. 도내 각학교 산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 개최 일자(2004, 2005 9월 1일 현재)

(구성현황은 성명과 직함 표기)

6. 도내 각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보고서

(각 교육청별, 정기점검, 수시점검)

7. 도내 지역교육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2003, 2004, 2005 9월 1일 현재)

8. 교육홍보활동 예산현황(2004, 2005. 9월 1일 현재)

- 교육청별(도, 시·군, 직속기관)
- 연도, 집행일자, 언론사명, 집행액, 홍보 및 게재내용
(본청, 지역교육청별 소계 및 지역계, 직속기관계, 총계)
- 충북교육소식, 디지털영상자료, 충북교육스타뉴스, 다목적멀티비전, 기타
- 2006년도 언론 홍보항목 및 예산(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9.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일간지 구독 현황(실과별, 일간지명, 부수)

10.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언론사 접대비용(2003, 2004, 2005 9월 1일 현재)

- 접대비, 일자, 자금 출처
- 선물비, 일자, 자금 출처

11. 학교 주변 홍보판 설치 학교(2004, 2005)

- 학교명
- 학교별 홍보판 설치 관련 지출내역
- 해당학교 2003, 2004, 2005 예산서 및 결산서(예산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구분하여 제출)

12. 200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3. 2005 충청북도 교육청 혁신과제를 정리한 연구. 보고 문건

14. 2005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인상분 사용 구체 내역

15. 특수학급 운영비 현황(2003, 2004, 2005 9월 1일 현재) 및 2006년도 계획

16. 특수학교보조원 배치 현황(2004, 2005 9월 1일 현재) 및 2006년도 계획

17. 학교안전공제회 사업비 예·결산 집행내역 (2004, 2005년 9월 1일 현재)

18. 감사원 감사 시정처리 요구 내용 및 이행 현황(2004, 2005년 9월 1일 현재)

-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 일련 번호, 사안, 일자 표시

19. 청주교육청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보고서 및 지적사항(2004, 2005년 9월 1일 현재)

20. 도내 사립학교별 재단전입금 현황(2003, 2004, 2005 현재)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학교별로 작성하고 학교급별 총괄분 별도 작성,
 - 연도별 별지 작성
21. 사학기관 연구 경영평가 실시 보고서(2004, 2005) : 도교육청
22. 학부모 고충사항 및 상담내용 정책반영 현황(2003, 2004, 2005) 및 향후 계획
23. 도내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실적(시·군별, 2004, 2005년 9월 1일 현재)
24. 충청북도교육청사무분장규정(2005년 9월 1일 현재)
25. 도내 대안학교(인가, 비인가)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2004, 2005 현재)
- 현황은 학교명, 위치, 종류, 실태, 문제점, 지원계획
26. 충북여중 문제 경과 보고
27. 양백여상 문제 경과 보고
28. 비정규직 영양사 타시도와 치우 실정 비교(2004, 2005년 9월 1일 현재) 및 개선방안

第18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13
II .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317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43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9월 20일 (화요일) 11시 19분

議事日程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9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이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기수

방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요번 임시회기 동안에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2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이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간사로서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3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

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

(끝에 실음)

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9월 21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진옥경.

○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9월 21일 (수요일) 11시 01분

議事日程 (제18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상정된 안건별로 주관과장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기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 작성의 주관과장인 초등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초등교육과장 전창동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평생체육과 소관인 충청북도 학생수영장과 초등교육과 소관인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에 관한 조례안이 함께 제안되어 주무부서인 초등과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북도학생수영장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 허가절차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교직원의 연찬 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2005년 10월 말경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수영장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대회 및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을 신설하고, 다이빙장 사용료를 스킨스쿠버 장비사용자와 일반사용자로 구분 징수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대상, 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제한, 사용자의 책임, 재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에서부터 7쪽 별표2, 별표4에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과 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개정안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 학생 다이빙장 사용요금은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에 관계없이 1인당 만원을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료 징수를 스킨스쿠버와 일반다이빙 이용자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구분하고, 일반사용자를 초등학생이하, 중·고등학생, 일반인으로 세분하고 경영풀장과 마찬가지로 15인 이상 사용할 시 단체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스킨스쿠버 등 관련 동호인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월 회원제를 운영하여 월 회원들에게 경영풀장과 같은 할인혜택을 주고,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에 경영풀장 및 다이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사물함 이용 시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액을 마련하였으며,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련원 및 아영장의 조례를 근간으로 하였고, 객실사용료 책정은 임

해수련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직원 및 가족과 공공단체 및 기타로 구분하였고, 평형별 사용료 차등적용은 타 시·도 교육청의 사용료 운영을 참고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련원 및 야영장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조례가 2건 들어왔는데 2건을 일괄해서 질문합니다, 한 건 한 건씩 합니까?

● 위원장 이기수

우선 한 건 한 건씩하고 한 건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건 마무리하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질의할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기수

예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부터 개관을 앞둔 충주교원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료가 저렴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도걸 이렇게 비교해서 적어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북 같은데 부안에 수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6만원씩 받고 냉·난방비를 별도로 징수를 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중 무휴로다가 빈방이 없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해수련원을 보면 지금 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수기 때는 만원, 그리고 성수기 때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임해수련원 사용자가 많아서 시설물 갖다가 놀리는 예는 없다

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 공적 예산으로다가 예산수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원씩 받았을 경우에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전복임해수련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가 됐고, 그 다음에 만원씩 했을 때 조례개정안처럼 11평 만원, 22평을 2만원으로 할 경우에 세입이 예산이 4,100만원 정도 4,185만원정도 되고 세출은 1억 1,600만원으로 한 7,400여 만원이 부족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러나 11평을 2만원하고 22평 자리를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세입이 한 7,285만원, 세출이 1억 1,600만원 해서 한 4,300만원이 부족으로 그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다시 예산 책정해야 되는 이러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평을 3만원, 22평을 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세입이 한 1억 385만원 되고 그 다음에 세출이 1억 1,650만원 정도 해서 한 1,200만원 정도의 부족 차액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임해수련원에 콘도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 사용하는 콘도 그것이 몇 평으로 되어 있죠?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1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13평, 그러면 22평이면 그거의 배 정도가 되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중 무휴로 사뭇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죠.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 기간을 한 80%정도, 그 다음엔 평일엔 한 20% 객실이 운영될 걸 갖다가 예상해서 잡아본 겁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지금 회의록 기재를 위해서 질의하시는 분도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직함을 말씀하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기재 때 회의록에 어느 분 말씀인지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같이 교육위원님들이나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꼭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하고 학생회관하고를 한꺼번에 질의드려도 괜찮은 것이죠.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학생회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총칙부터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명칭이 맞습니다. 교직원복지회관이라고도 하고 또 명칭이 다릅니다. 지금 그렇죠.

교직원복지회관이라고도 하고 또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을 줄여서 복지회관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왜 지역교육청 소속이 됩니까? 정의에서 저로서는 이거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충주교육청 예산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으로써 우리가 작년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왜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으로 변경이 되고, 이름도 명칭이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으로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마음대로 명칭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킨 일이 없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초등과장 전창동입니다.

충주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요계 2005년 7월 22일자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 진옥경 위원

시행규칙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명칭변경을 마음대로, 예산은 교직원복지회관으로 하고서 규칙을 명칭을 그렇게 바꿔도 됩니까?

조례 밑에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명칭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하에 지금 도교육청 소속이지 이것이 어떻게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난번 조례에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해서 우리 도교육청산하 행정기구 그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만 충주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명칭은 교육장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명칭은 우리 교육청이 복지회관이 처음 생겼는데, 충주교육청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교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인데 단지 지역성을 띠어서 충주 쪽에 있기 때문에 충

주라는 말을 두고 거기에서 관장하는 걸 교육장이 관장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 설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모든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교원복지회관을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지역교육청 소속이 됩니까?

관리 뭐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학생실습야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청주라든지 아니면 충청북도학생야영장이 따로 있고 충주에 중원야영장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지금은 한 군데 있는 것을 명칭을 이렇게 저희 예산심의를 충청북도교원복지회관으로 통과를 시키고 어느 틈에 규칙을 그럼 충주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야영장 같은 것도 우리 도교육청 행정기구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 마냥 복지회관도 그때 삽입되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개정은 무엇을 개정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지난번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행정기구 설치조례 10월 8일 제2823호로 본 위원회에서든 것 마냥 이게 도의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 진옥경 위원

명칭을 뭐로 했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그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여기에 의해서 지난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10월 8일날 우리가 그것을 명칭을 그렇게 통과를 시켰나요?

● 교육국장 노재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설치조례인데 명칭을 그렇게 했느냐구요?

● 교육국장 노재전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여기 지금 교원복지회관조례개정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명칭으로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셨군요. 7월 22일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까?

규칙을 그러니까 개정을 하시면서 명칭변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지금 예산에.....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거기에 제29조에 교직원복지회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4항에 충청북도교육원 충주복지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510-3번지에 둔다 해서 7월 22일날 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조례가 아니라 이걸 교육규칙입니다. 교육규칙은 저희.....

● **진옥경 위원**

아니 예산을 저희가 1회 추경에 7월달에 저기 했을 때 그게 며칠입니까?

추경이 저희가 7월이면 8월달에 도의회를 통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직원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그 이전에 올 때는 교직원수련원으로 처음에 계획서가 왔다가 가칭으로 하다가 교직원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을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용 및 징수료에 관련한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초등과장 전창동입니다.

그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1조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4조에 보면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명칭변경을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시다마는 지역교육청 소속 교원복지회관이라는 것도 저는 금시초문인데다가 지금 명칭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처음에 된 것은 명칭이 가칭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저기가 된 것이

본 명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가칭은 충청북도수련원이 가칭이죠. 수련원을 처음에 건립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수정예산은 제가 어저께 그걸 찾아왔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충청북도수련원이라는 예산 위에다가 새로이 수정표를 붙였습니다. 붙여서 교직원 복지회관으로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사업 설명서를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갑자기 충주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규칙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고 그 다음에 소관까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책임을 그쪽으로 한데도 아무런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조례개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옵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못 드린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위원입니다.

규칙의 성격하고 명칭을 규칙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명칭은 규칙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라구, 거기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송대현 위원**

잠깐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충주복지나 충주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설명할 자료가 나와서 검토된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체 복지회관 심의를 보류하도록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진옥경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초등과장님께서 지금 조례를 읽으셨는데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산하에 될 지정했을 때를 말하는 거지, 지금 사실 교육청, 학교이름만 바꾸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갖고 바꾸는 얘기인데, 충청북도교직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회관인데 그걸 규칙에 따라 갖고서 충주교육청 소속으로 명명하는 얘기는 앞으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육청에서 만약 충주시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보은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걸 사용한다면 충주시교육청 선생님들을 우선 해 갖고서 그걸 배정한다고 했을 때도 하등 이유를 달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 진옥경 위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진옥경 위원

예

● 송대현 위원

진옥경 위원님이 얘기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요, 명칭에 관한 부분은 이 쪽 집행청의 답변은 설치 및 기구 하부조직이라는 근거를 들어 가지고 조례를 들어 가지고 명칭까지 조례로 바꿨다 그 바꾼 것을 보고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그 기관의 설치에 관한 관리를 충주교육청에 주는 건 좋습니다. 하부 규칙으로 다가 이 관리를 충주교육장 산하에 둔다 뭐 규칙으로 좋지만은 명칭을 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있는 부분이지 그걸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집행청하고 우리 위원간에 견해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짚고서 다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동의로 내일도 또 우리가 조례심사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법리적인 해석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다가 수련원계획에 관련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건을 보면 여기에 교육위원님들의 견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상일 의장 등 대다수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북부지역 교직원수련원이 아니고 충청북도교직원수련원이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충주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사전 설명의 의미도 없고 지금 이 명칭으로써 조례심사는 말씀마따나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지금 송대현 위원께서 긴급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 문제는 내일 감사소위원회에 때 붙여서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소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수 없는 애기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5간 정회해서 의견을 모으고 나서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수

송대헌 위원님 하세요.

● 송대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회관 설립 당시에 한번은 부결이 됐던 겁니다. 예산 전에 그 뒤에 재차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휴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아니냐 또 현장도 가 봤고 위치도 적절하고, 그래서 이게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도 성립시켜줬고 또 제반 거기 관계되는 것을 추진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조례 속에 이름이 충주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물론 내용상으로는 전과 다름없이 충청북도교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집행청의 설명입니다마는 이렇게 출발점하고 전혀 다른 명칭이 올라왔을 적에 이걸 규칙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 이름을 분명하게 매듭지은 다음에 요번 기에서는 이걸 보류하고, 이것이 당초대로 규칙을 바꿔서 본래 이름으로 바꿔서 다음 달에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모든 관계 증빙서류로 해서 납득을 시키든지 한 다음에 이 명칭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아까 뭐 일부 설명도 집행청이 다릅니다. 일부 쪽에서 각 지역별로 전부 다 복지회관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충주를 넣었다는 등 또 관할 충주교육청이기 때문에 충주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등 이러한 것 등등이 처음 시작할 때의 출발점하고 너무 달리 갔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충주에 편입한 이름이 들어가고 했다면 당초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도 않았고 설립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이 결정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반 조례개정을 심의하는 게 타당해서 요번 심의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대헌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성영용 위원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충주복지회관에 관한

부분만 하시고 학생회관 사용료 관계는 업무수행 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리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송대현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저는 아직 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학생회관이나 아니면 교직원복지회관에 관련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이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매우 좀 권위적이라고 할까요, 구시대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기관들이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총척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관련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때로는 좀더 부드러운 그런 서비스의 차원으로 서술이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교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손질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9조 1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서도 2항이 있습니다.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관장의 어떤 재량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별이라는 그런 용어는 조례나 이런 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의 어떤 뭐랄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려가 있어서 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권한을 조례에도 명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용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40조가 있는데 40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 및 이에 근거하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은 구태여 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신청서를 낼 적에 그거에 대한 안내문들을 뒷면에다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복지회관 측의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자 책임을 없

다는 것을 구태여 못 박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또 41조 사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자의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기관을 볼 때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 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데, 또는 원상복구 정도는 지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정도로써 다른 기관과도 형편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어린이들이 학생이 사용하는 것들도 아니고 교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왜 이렇게 지나친 어떤 경직된 문구들이 들어가는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제 5장 학생회관이 있고 21조 학생회관의 사용에 보면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하는 부분이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팅장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가름한다 이것도 허가 중심적인 그러니까 관 중심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

증 또는 이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데 허가 자체를 너무 강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소속이나 소관이나 아니면 명칭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때, 이런 문구 부분에서도 타 기관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고 가능한 수요자의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그냥 뒤에 이용상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서 사용하게 하는데 이럴 때 인터넷 사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조금 더 친절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 제출하는 것들도 있지만 요새는 수영장도 그렇고 인터넷 상으로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때 관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더 면밀하게 조례안에 넣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뒷면에다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꼭 읽어보도록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는데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대상 부분에서도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단체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허가한 자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 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이라는 말보다는 원칙을 앞에 두고 다만 과장은 이리이러한 근로청소년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회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와 딱 규정지어서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시고 또 늘 기안하시는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뉘앙

스를 주기 때문에 서비스의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송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복지회관을 심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회관 것만 다를 것인지를 분명히 위원장님이 의견을 듣고, 그러고서 지금 진 위원님은 여러 가지 복지회관까지 같이 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복지회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했던 앞에 문구 조금 봅시다. 제안설명의 앞부분에 제안 설명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복지회관 부분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심의하고 그 관계를 분명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회의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니까 송대현 위원님께서서는 충주복지회관 부분은 요번에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성영용 위원께서는 학생회관에 대한 부분은 업무에 차질없게끔 그 부분만 수정의결 해 갖고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진옥경 위원님 의견은 여러 가지 조례에 표현된 문구가 상당히 딱딱하

면서도 관리적인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부드럽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의견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저기 학교환경위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모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남훈 위원**

아직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충주교원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송대헌 위원님 말씀처럼 명칭관계로다가 보류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회관소관 수영장 관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급한 사항이라고 봐서 이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수영장부분에서요, 문구를.....

● **송대헌 위원**

아니 심의할 걸하고서 심의할 거예요. 요걸 결정하고 나서 그 부분을 심의를 들어가야죠. 방향을 정해서.

● **위원장 이기수**

본 위원장이 제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을 살펴보면 충주복지회관 부분은 이로서부터 당초 취지와도 또 안맞는 여러 부분 때문에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학생복지회관에 대한 그 수수료 문제는 우리가 의결해줘야 만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의 자구수정은 어디입니까, 학생회관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아니 복지회관에 주로 많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의 제의는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복지회관 부분은 보류시키고 학생회관의 징수료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은 토론을 하셔 갖고 자구수정 해 갖고 그 부분만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당한 문제들이 부수됩니다. 그래서 이거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 성영용 위원

(12시 25분 속개)

이건 뭐 특별한 내용없으니까

●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2004년 2월 11일 가칭 충청북도교직원수련원 건립계획안을 확정하 바 있고,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으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에도 이번 상정된 조례안의 명칭은 2005년도 7월 22일 규칙으로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으로 임의 변경하여 조례를 제출한 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더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함)

모든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 하나 안건이 또 남았습니다. 그것은 식사를 하고서 오후 몇 시에.....

● 성영용 위원

그냥 계속 하시죠.

● 김남훈 위원

그냥 하고서 나중에 끝나고.....

● 위원장 이기수

아주 하고서 식사를.....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27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3월 31일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던 정화위원회를 도교육청은 폐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위원회 정족수를 15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7명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위원장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학부모 위원이 2분의 1이상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의결과 정족수는 과거에는 2분의 1로 출석위원으로 했는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은 교육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간사는 당연직으로 우리 담당 서기 및 주사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기타 필요한 것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전에는 교육장이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맞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럼 위원 위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교육장이 위촉을 해서 구성합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김남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과거에는 교육장이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당연직으로 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원도 될 수가 없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은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아, 위원은 될 수가 없고 위원들을 추천만 할 수 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반은 당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인데 이 추천을 물론 교육장이 하겠죠.

그런데 교육장이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적격자라고 추천해 주는 기관이 없어요?

이걸 안 그러면 교육장이 자기 잘 아는 사람 몇 그냥 위촉해버리고 말 그럴 여지가 있어요.

학부모 위원도 그렇지 학부모 위원도 무슨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검증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고 이렇게 객관성 있고 이런 위원들로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규정된 것은 없고 우리가 한번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장은 위촉을 하고 위촉을 추천위원으로 아마 위원을 자문추천을 하는 교육장에게 이런 걸 검증하는 것을 한번 법리를 초청해 가지고.....

● 간사 이상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객관성 있고 정말 학식, 덕망 잘 갖춰진 분이 추천이 되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면 교육장이 자기 하기 편리한 사람만 데려다 뵈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이런 추천위원을 어떤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구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그러면 교육장도 마음놓고 거기에서 한번 거른 사람을 위촉하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다만 학부모 위원만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이렇게 확정을 위촉자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 간사 이상일

그러면 지역교육장은 현재는 초·중하고 그것만 관리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도 다 거기에 교육장 관하로 들어가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대학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간사 이상일

대학까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다 됩니다.

● 간사 이상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3월 31일날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겁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전혀 제시가 안 됐는데 많이 개정이 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4조에 3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 해 가지고 맨 뒤에 관계법령집 발췌해 가지고 맨 뒤에 있습니다. 그거에 근

거해 가지고 한 겁니다. 1,2,3,4,5,6,7항 이렇게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 중에 이것이 4조의 3이 전체가 변경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요것이 다 나온 거죠.
개정된 거는 요거에 근거해 가지고 전부 다 조직,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항서 7항까지 거기 나온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개정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보건법시행령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 하에서 여전히 교육감이 도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폐지될 근거는 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때문에 지금 이것이 도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폐지된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중전에 환경정화위원회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감 소속 하에도 정화위원회를 두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2000년에 조직을 해 가지고 2001

년까지 도교육청이 운영이 되다가 2003년도부터 2000년에 구성해 가지고 2001년, 2002년까지 하다가, 그런데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게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 이런 거를 지적을 받았습시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비구성으로 되어 왔습시다. 이거를 구성을 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도교육청에서의 업무 자체가 도교육청 정화위원회는 없다 할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예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군요, 도교육청 정화위원회가요,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맞습시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2002년도 행정감사 때 했을 때 회의개최와 안전처리가 전부 제로로 되어 있었습시다. 도교육청 정화위원회가요.

그리고 2003년도에 위원회를 할 때 충주만 되어 있지 않고 도교육청은 없었고 그리고 10개의 시·군에서는 전부 정화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03년도에도 제대로 역할을 각 지역정화위원회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3년도에도 제가 받기는 했습시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역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여전히 지역은 남아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취지를 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는 매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제가 2003년도에 영동의 교육장으로 있을 때 한 3,4번 정도 제가 했습시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엔 정상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꼭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 정상적으로 하되 도교육청만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비상시적으로 도교육청에는 예를 들면 청주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가 들어오면 청주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정역학을 할까 이렇게 되니까 그건 조정으로 잘 안 될 때는 행정심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교육청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

● 진옥경 위원

그래 지금 처음에 설치조례에 애초에 지금 수정안 전에 도정화위원회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런 계획 자체가 도 단위의 계획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요거는 행정업무로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담당자가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도교육청의 교육감소속의 정화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대신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회의를 개최 안해서 유명무실하다면 회의를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구태여 있던 것들을 없애고 이런 식의 조례개정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뭐랄까 이런 방향으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금년 3월 31일자로 동 조항이 개정된 거에 의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오어(or)는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그러니까 교육감 아니면 교육장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감은 자동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충청북도내 교육감이 한다면 교육장 소속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충청북도를 우리 교육감이 해야 되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심의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들 제가 알기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어떤 건물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규제를 풀어줄 건가 말 건가 이것을 주요하게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언젠가 보도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거기에 위원들이 어떤 뭐랄까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자꾸만 하는 바람에 학교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교육청 위원회에 위생정화 위원회가 역할들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우려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이제 상대정화구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쪽으로 피해가 있느냐는 실무자가 알거든요, 우리 담당사무관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시죠.

● 학교보건담당 함정기

학교보건담당 함정기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갖다가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요인은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위원회에서 소홀히 심의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교육장이 하던 것을 갖다가 호선토록 했고, 위원 수를 9인에서 15인 이내인 것을 13인에서 17인까지 확대를 했으며,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과반수 출석위원 중에서 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했었는데 출석위원의 3분 2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결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푼다든지 이럴 때에 보다 많

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을 때만 풀 수 있도록 해서 좀더 강화한다는 뜻인데,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함 이렇게 해서 종전에 그냥 학부모가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함보다는 약간의 뭐랄까 심의나 이런 기능들이 조금 훈련이 된 분들을 여기에 넣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또 그런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구태여 넣지 않고 학부모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역량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역량이나 그 사안의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이것들을 제가 넘어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왜 이것이 학교정화위원회가 중요한지에 대한 사전의 이해,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위원들이 심각하게 의무를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판단을 유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들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름장치가 없다는 부분도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 호선이나 추천 위촉의 어떤 권한을 교육장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우려는 여전히 이 조례에서 차단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리고 설치조례뿐만이 아니라 규칙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화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를 바꾸게 되면 규칙도 거기에 관련한 것이 덩달아 바뀌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화구역의 설정자와 관리자가 설정자는 연1회 이상이고 관리자는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관리자의 임무나 정화구역 설정자의 임무는 변동이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그 말씀 고맙고, 규칙 요거는 조직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규칙에 나온 거는 정화위원회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화구역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별로 변동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제 관리자가 되고 교육장님이 설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되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 조례는 자동폐기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폐기는, 아무 절차없이 그냥 폐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도 조례를 개정할 하는 거니까 폐기가

아니고 이걸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개정을 하는 거죠.

● 위원장 이기수

그러면 이게 개정을 하면 지금 도에 있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여기서는 지금 하는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든지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서 교육장들이 지금 각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 갖고서 모든 행정을 하는 얘기인데, 그걸 조례를 개정하면 그대로 있으면 개정하는,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요, 학교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소속 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할 안하는 거죠.

왜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요번에 개정된 법령이 시행령이 교육감 혹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소속의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에 설치를 하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소속에는 설치를 안한다는 거지 폐지라는 거는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기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제183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이상일,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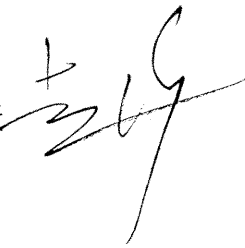
교육국장 노재전,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9. .

위 원 장

이 기 수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8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9. 20. (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9. 21. (수)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